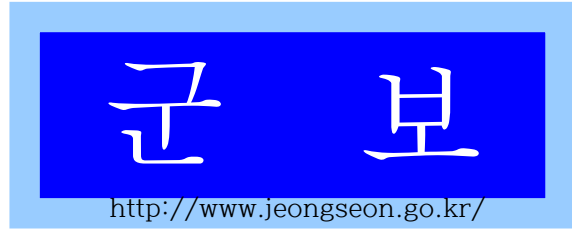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3호 2019. 10. 24. (목)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12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 정선군 공고 제2019-114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
- 정선군 공고 제2019-1143호 정선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정 입법예고.....1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12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9.06.18.)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018.12.21., 2019.08.12.)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채용 운영 표준안 반영
(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안 제14조, 안 별표 13)
- 조문 나열 순서, 개인정보 등 운영상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안 제3조, 안 별지 제2호 서식)
-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안 제14조, 안 별표 11)
-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안 제24조의2 신설)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절차 명확화
(안 제23조, 안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 자격증 명칭 개정 및 변경

(안 별표 4,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ksh0291@korea.kr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호”를 “제1호”로,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제5조제2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뒤에 제 24 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 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신규임용시험</u> ----- ----- ----- ----- ----- -----.
②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u>신규임용시험</u> ----- ----- ----- ----- ----- -----.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② (생략)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 연수 삽입) ①~② (생략)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 연수 삽입) ①~② (생략) 제 24 조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 연수 삽입) <신설>
별표 1~22, 별지 제1호~제8호	별표 1~22, 별지 제1호~제9호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114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라목을”을 “라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급별로영 별표1의 각 호”를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할때”를 “할 때”로,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6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준용하되,”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2는”을 “2제5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별표 2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0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4.16.>

<본조제목개정 2013.06.0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4.1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4.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신설 2008.07.0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06.>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3.06.05, 2015.07.06.>

1. 제8조의 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6.0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07.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01)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6. 05 조례 제2341호>(“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1.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9.4.16.>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개정 2019.4.16.>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6.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삭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 별표1의 각 호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 라목을 -----. ②-----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를 적용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7. (생략)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의 각호-----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할 때 ----

----- 별표2-----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 의한다.

1. ----- 2제5항은 -----

--.

2. ~ 7. (현행과 같음)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

규정」”으로 한다.

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
로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9-1143호

정선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정 입법예고

2019년 10월 2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가. 정선군 공무원과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통한 선진행정 습득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 3조)
- 나. 파견대상자 선발 및 선발고사 (안 제7, 8, 9조)
- 다. 담당업무 및 복무 등 (안 제11조 등)

3. 추진 일정

- 가. 입법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 2019. 10월
- 나.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9. 11월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안 1부.

정선군 훈령 제 호

정선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군 소속공무원을 외국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거나, 외국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정선군에 수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이라 함은 정선군 소속공무원을 외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용”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정선군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상호 파견근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상호주의 원칙의 준수) 파견과 수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인원과 기간, 체재기간 중의 복무와 처우 및 예산부담이 서로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합의서의 교환) ①제4조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견 및 수용이 있을 때마다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명문화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파견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양국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서명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이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7조(파견대상자의 선발) ①파견대상자는 공개전형 절차 또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 선발은 파견근무에 따른 준비와 외국어의 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파견업무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파견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를 거쳐 교환근무개시 6월전까지 교환근무 계획, 선발고사의 일정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선발고사) ①선발고사는 서류심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서류심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다.

③실기시험은 파견대상국의 언어에 대한 회화능력을 시험한다. 다만,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의 자격증 및 공인성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면접시험은 국가관, 군정에 대한 관심도, 품행 등 외국에 파견할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선발예정자의 결정은 서류심사 30점, 실기시험 30점 및 면접시험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의 성적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자의 수가 선발예정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심사 순서에 의한 고득점자로 한다.

⑥선발고사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자의 수와 같을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선발고사 응시자격) ①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파견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8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각 부서의 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2.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1. 3월 이상의 국외훈련(해외연수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견근무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 3년을 초과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전교육) 주관부서장은 파견근무가 결정된 공무원에게 파견대상국 언어, 컴퓨터 등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담당업무 및 복무) ①파견공무원 및 수용공무원이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따른다.

②주관부서장은 파견공무원의 소재,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및 근무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파견공무원은 귀국 후 2월 이내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일시귀국) ①파견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파견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13조(복귀명령) 군수는 파견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파견된 외국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그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14조(의무복무) ①파견기간이 6월 이상인 파견공무원이 복귀 후 군에서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제15조(의무복무 및 복귀명령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파견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된 기일 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2. 파견근무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복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자연적인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파견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면직 또는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에 소요된 경비라 함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한 항공료, 준비금 및 수용 공무원에게 당해 연도에 모두 소요되는 6월에서 1년간의 경비를 말한다.

제16조(파견 및 수용에 따른 경비부담) ①파견공무원의 최초 출국 및 파견 종료 후 귀국에 따른 왕복항공료는 군에서 부담한다.

②그 밖의 파견 및 수용에 따른 경비는 양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서에 따른다.

제17조(파견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보며 각종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예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다른 법규의 준용)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